

『퇴직연금 정기예금(발행어음)』 특약

제 정: 2017년 9월28일

개정(1): 2018년 6월26일 개정(2): 2018년12월13일 개정(3): 2020년 6월9일 개정(4): 2023년 5월15일

개정(5): 2024년 4월30일

제1조 약관의 적용

「퇴직연금 정기예금(발행어음)」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수신거래기본약관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발행어음 약관」을 적용한다.

제2조 구성상품

발행어음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기관으로 한다.

제4조 계약기간

- 이 예금의 계약기간(만기)은 3개월, 6개월, 9개월, 1년으로 한다. 다만, 자산관리기관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별도 정할 수 있다.
-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이 만기일이 된다. 다만, 자산관리기관이 공휴일의 직전영업일에 해지요청 시에는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결정된 약정이자율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당김 일수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다.

제4조의2 만기처리방법

-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: 만기가 도래한 계약은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하며,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의 별도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을 할 수 있다.
-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연금(IRP) 퇴직연금: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 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된다.

제5조(가입금액)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이율의 적용)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(재예치일)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.
-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분할인출로 남는 잔여원금에 대해서는 신규일(재예치일) 적용된 이자율 및 만기일을 그대로 적용한다.

제7조(이자지급 방식)

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한다.

제8조(중도해지)

- ① 이 예금은 분할인출 횟수 제한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, 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일반 법인 정기예금(발행어음) 기본 이자율의 50%를 적용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(발행어음)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.
 1. 퇴직급여지급 또는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2.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 - 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나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(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)
 - 다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라.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 - 마.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- 바.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 3.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 - 가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

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
나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
다. 관련법령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
라. 수탁자의 사임

마. 가입자의 사망

4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

5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

6. 수수료의 징수

제9조(기타)

-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(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인 경우 가능)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하다.
- ② 이 예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 운용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,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.

부칙<2017. 9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1: 2018. 6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: 2018. 12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3: 2020. 6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4: 2023. 5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5: 2024. 4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